

전주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1가단60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효영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7. 7.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8,816,318원 및 그 중 38,746,918원에 대하여는 2021. 2. 19.부터, 30,069,014원에 대하여는 2021. 2. 18.부터 각 2021. 3. 25.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이 2020. 6. 18.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20. 7. 13. 접수 제150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곽경평

별지